

광주지방법원 2022. 9. 7 선고 2021나672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축산영농조합법인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4. 망 E의 소송수계인 F

5. 망 E의 소송수계인 G

6. 망 E의 소송수계인 H

7. 망 E의 소송수계인 I

8. 망 E의 소송수계인 J

9. 망 E의 소송수계인 K

변 론 종 결 2022. 7. 13.

판 결 선 고 2022. 9. 7.

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. 8. 24. 선고 2020가단513915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1.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. 6. 8. 접수 제25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 피고 B은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2013. 2. 27. 접수 제84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  - 가. 피고 F은, 피고 G에게 위 부동산 중 16377/54440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H, I, J, K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0918/54440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9. 5. 30. 접수 제233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  - 나. 피고 D은, 피고 G에게 위 부동산 중 3474/544401지분에 관하여, 피고 H, I, F, J, K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316/54440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. 5. 30. 접수 제233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,
  - 다. L에게 위 부동산 중, 피고 G은 19851/544401 지분, 피고 H, I, F, J, K은 각 13234/54440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. 12. 15. 접수 제582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당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추가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 B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, 피고 B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, 망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B을 협박하여 망 E이 지정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으므로, 피고 C 명의 등기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## 나. 판단

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(이 사건 제1부동산 포함)을 O영농조합법인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,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여러 필지를 원고의 채권자인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후,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정하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, 피고 B 역시 원고의 부도로 인하여 피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을 조합원들이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(피고 B의 2020. 9. 18.자 답변서 내용이 피고 B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)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,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 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김용신, 판사 정영하, 판사 황진희